

## 하반기 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공고

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.

2019. 8. 21.

###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

#### 1. 선발분야

##### 가. 성적우수 장학생

- 선발인원 : 고등학생 100명, 대학생 44명(관내 학교 30명, 관외 학교 14명)  
\*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 가능하며, 관내 대학은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
- 지급액 : 고등학생 700,000원, 대학생 최대 2,000,000원
- 신청방법 : 학교장 추천

##### 나. 모범 장학생

- 선발인원 : 중학생 49명, 고등학생 59명, 대학생 48명 \* 선발인원 50% 학교 배정
- 지급액 : 중학생 300,000원, 고등학생 700,000원, 대학생 최대 2,000,000원

##### 다. 특기적성 장학생

- 선발인원 : 예산 범위 내(초·중·고)
- 지급액 : 1위 700,000원, 2위 500,000원, 3위 300,000원
- 신청방법 : 학교장 추천

##### 라. 지역혁신인재 장학생

- 선발인원 : 2명(대학생 및 일반 시민) ※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급액 : 2,000,000원
- 선발방법 : 사회일반 및 문화·예술·체육 등 분야에서 세종의 발전에 기여한 자 선발

##### 마. 공익발전기여 장학생

- 선발인원 : 3,800,000원 예산 범위 내(중·고·대) ※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급액 : 중학생 600,000원, 고등학생 1,200,000원, 대학생 2,000,000원
- 신청방법 : 공익발전기여자 소속 해당 기관장(ex. 조치원소방서장) 혹은 신청인 소속 학교장 추천

## 2.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 : 2019. 9. 20.(금) 소인분까지

※ 9.20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(소인분이라 함은 9.20일자 발송분까지 접수 가능함)

#### 나. 제출서류

다. **선발결과 발표** :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(<http://www.sjhle.or.kr>) 및 세종 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ejong.go.kr>) “공지사항” 게시

라. **분야별 접수방법** : 분야별 선발계획 내용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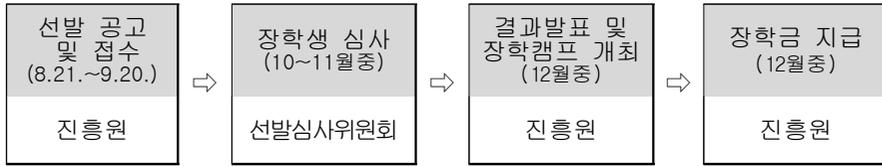
마. **온라인신청방법** : (관내·외 성적우수, 모범 장학생) 대학생만

※ 온라인 신청기간은 공고기간과 상이함

- 1) 진흥원 홈페이지 <http://www.sjhle.or.kr> 회원가입 → 장학금 신청 → 해당 장학금 신청 클릭 → 질문 응답(대상자여부 확인) → 1차 개인정보 입력 → 1차 진행상태 확인(처리완료 시 2차 진행) → 2단계 구비서류 제출 → 서류보완(해당서류 보완) 또는 최종완료(장학금신청완료)

구분	신청방법	신청기간
온라인 신청	① 진흥원 홈페이지 <a href="http://www.sjhle.or.kr">http://www.sjhle.or.kr</a> 접속 ②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	-
온라인 접수(1차)	<p><b>&lt; 1차 신청경로 &gt;</b></p> <p>■ 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(<a href="http://www.sjhle.or.kr">http://www.sjhle.or.kr</a>) → 장학금 신청 → 해당 장학금 신청 클릭</p> <p>① 질문 응답(대상자여부 확인) 후 개인정보 입력 후 마이페이지 장학금신청내역 확인 &lt;접수상태별 조치 방법&gt; “접수처리중” 수정가능 “비대상” 진흥원 연락 확인바람 “처리완료” 1차 접수 완료 2차 접수 대기</p>	8.26.(월) ~
온라인 접수(2차)	<p><b>&lt; 2단계 신청 경로 &gt;</b></p> <p>■ 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(<a href="http://www.sjhle.or.kr">http://www.sjhle.or.kr</a>) → 마이페이지 → 장학금 신청내역 → 2차 접수 ‘접수처리 중’ 상태 클릭 → 구비서류 첨부</p> <p>② 구비서류 제출 (스캔본 첨부) &lt;접수상태별 조치 방법&gt; “접수처리중” 입력 및 수정가능 “비대상” 진흥원 연락 확인바람 “처리완료” 최종 접수 완료</p>	9.4.(수) ~ 9.20.(금)

### 3. 선발일정



### 4. 기타사항
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
- 타 기관(학교)과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
- 문의처 : 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☎ 044-865-9685~9686

## 2019년 하반기 (재)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계획

### I 분야별 선발계획

#### 1 성적우수 장학생

##### 가. 고등학생

○ 선발인원 : 고등학생 100명

- 학교별 배정현황

단위 : 명

총인원	세종고	세종여고	한솔고	세종하이텍고	세종국제고	도담고	아름고	고운고	두루고	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	종촌고	양지고	보람고	새롬고	소담고	세종예고	다정고	성남고
100	8	7	7	4	3	6	8	5	6	3	8	7	6	9	4	2	2	5

○ 지급액 : 고등학생 700천원

○ 선발기준 :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

※ 직전학기 성적이 5% 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학교에서 일괄 제출

○ 추천권자 : 학교장

○ 선발 제외 대상

-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(연도별 구분)

○ 접수방법 : 학교별 취합 후 일괄 제출(원본 제출)

##### 나. 대학생

○ 선발인원 : 44명(관내 30, 관외 14)

- 관내 대학교 인원

총인원	고려대	홍익대	대전카톨릭대	한국영상대
30	12	11	1	6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

○ 지급액 : 최대\* 2,000천원 (+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)

○ 선발기준 (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)

-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- 본인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(공고일 기준)

- 관내·외 배정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추가 합격자 번호를 부여하고,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·의결하여 결정
- 직전학기 성적 [3.5(4.5점 만점), 3.3점(4.3점 만점), 3.0점(4.0점 만점)] 이상으로 동점자의 경우 ①소득기준 > ②다자녀 > ③우리 시 봉사실적으로 우선 선발
- ※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기준이며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

○ 추천권자 : 총 · 학장

○ **선발 제외 대상**

-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(연도별 구분)
-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
-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

○ 접수방법 : 진흥원 홈페이지에 개별 신청

② **모범 장학생**

- **선발인원** : 156명[중학생 49, 고등학생 59, 대학생 48] \* 선발인원 50% 학교배정
- 학교별 배정현황

단위 : 명

구분	총인원	조치원	조치원연중	연동중	연서중	금호중	전의중	장기중	부강중	한솔중	도담중	새롬중	아름중	어진중	고운중	두루중	중촌중	양지중	소담중	새움중	새뜰중	보람중	글벗중	다정중	반곡중
중학생	24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

구분	총인원	세종고	세종고	한솔고	세종고	세종고	도담고	아름고	고운고	두루고	세교연원	중학	중촌고	양지고	보람고	새롬고	소담고	세종고	다정고	성남고
대학생	30	2	2	2	1	1	2	2	2	2	1	2	2	2	2	1	1	1	1	2

구분	총인원	고려대	홍익대	대전카톨릭대	한국영상대
대학생	24	9	9	1	5

○ **지 급 액** : 중학생 300천원, 고등학생 700천원, 대학생 최대\* 2,000천원

\*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

○ **선발기준**

① **중·고등학생**

- (관내 거주자) 본인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\* 이하 가정의 자녀
- (관외 거주자)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본인 또는 부, 모 중 1인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경우
- \*중위소득 이하 관외 거주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신청 불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가사상황조사서 상 과세표준액 5억 이하인 경우(5억 이상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후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)

○ 접수방법 : 진흥원에 개별 신청

② **대 학 생**

- 본인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\* 이하 가정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

○ **선발 제외 대상**

-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
- 휴학생, 휴학 예정자,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
-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[경찰대, 육사, 해사, 공사, 한국과학기술원(카이스트), 포스텍 등]

○ 접수방법 : 진흥원 홈페이지에 개별 신청

※동점자 발생 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1호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

### ③ 특기적성 장학생

- 선발인원 : 예산범위 내
  - 지급액 : 1위 700천원, 2위 500천원, 3위 300천원
  - 선발기준 (※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)
    - 관내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본인 또는 부, 모 중 1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
    -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, 과학, 예체능 등 분야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·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순서 기준, 3위 이상\* 수상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
    - \* 시상내역이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일 경우 대상이 1위
  - 단체종목의 경우 별도 개별 수상한 자만 선발(ex. 최우수 선수상)
- ※동점자 발생 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1호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

#### ○ 추천 제외 대상

-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
  - 국민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
  - 시·군·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 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
  -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입상자
  -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
  - 대학(원)의 총(학)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
- ※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, 장학금1인 1회만 지급하며,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
- 추천권자 : 학교장
  - 접수방법 : 진흥원에 개별 신청

### ④ 지역혁신인재 장학생

-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: 2명 / 1인당 2,000천원 \*예산 소진시까지
- 선발대상 : 일반시민 및 대학생
- 선발기준
  - 주소지 제한 없음
  - 사회일반 및 문화·예술·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

- 선발제외 : 초·중·고등학생
- 지원서류 : 자기소개서, 장학금사용 계획서, 기타 증빙자료
- 지원내역 : 자기개발 지원금(훈련비, 활동비 등)
- 접수방법 : 진흥원에 개별 신청

### ⑤ 공익발전기여 장학생

- 선발인원 : 3,800천원 범위 내
- 선발대상 : 중·고·대학생 ※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급금액 : 중학생 600천원, 고등학생 1,200천원, 대학생 2,000천원
- 선발기준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의 자녀로 본인(국가유공자) 또는 자녀(신청인)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- ※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
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의사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본인(의사상자) 또는 자녀(신청인)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- 그 외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자녀
- 추천권자 : 해당 기관장(지정 당시 소속 기관) 혹은 학교장이 추천
- 선발제외 대상
  -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
  -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퇴학,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중 그 처분사유 등이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
- 접수방법 : 진흥원에 개별 신청

## 참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

**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<개정 2015. 12. 22.>

1. **순국선열**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2. **애국지사**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3. **전몰군경(戰歿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**전상군경(戰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5. **순직군경(殉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6. **공상군경(公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7. **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**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8. **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**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
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
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9. **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**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
10. **참전유공자**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
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
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11. **4·19혁명사망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12. **4·19혁명부상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13. **4·19혁명공로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14. **순직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15. **공상공무원**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16. **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**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
17. **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**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
18. **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**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

1. 성적 평가

① 고등학생

- **선발기준** :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※ 직전학기 성적이 5% 이내로 성적증명서 및 석차 확인 양식(송부 서식) 학교에서 일괄 공문 제출

② 대학생(재학생)

- 대학별 학점 만점 기준이 상이(4.0, 4.3, 4.5)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'만점 성적 환산표'로 평가하여 환산점수 89점 이상인 자
  - (관내 학교) 학교별 재량에 의하여 선발하여 배정 인원 내 진흥원 제출
  - (관외 학교) 아래 성적을 1순위로 하되 동점자의 경우 ① 소득기준 > ② 다자녀 > ③ 우리 시 봉사실적\*으로 우선 선발
- 만점 성적 환산표(서울대학교 백분위환산점수표 활용)

환산점수	4.5 만점	4.3 만점	4.0 만점
100	4.50	4.30	4.00
98	4.49~4.40	4.29~4.20	3.99~3.90
97	4.39~4.30	4.19~4.10	3.89~3.80
96	4.29~4.20	4.09~4.00	3.79~3.70
95	4.19~4.10	3.99~3.90	3.69~3.60
94	4.09~4.00	3.89~3.80	3.59~3.50
93	3.99~3.90	3.79~3.70	3.49~3.40
92	3.89~3.80	3.69~3.60	3.39~3.30
91	3.79~3.70	3.59~3.50	3.29~3.20
90	3.69~3.60	3.49~3.40	3.19~3.10
89	3.59~3.50	3.39~3.30	3.09~3.00

2. 소득 및 재산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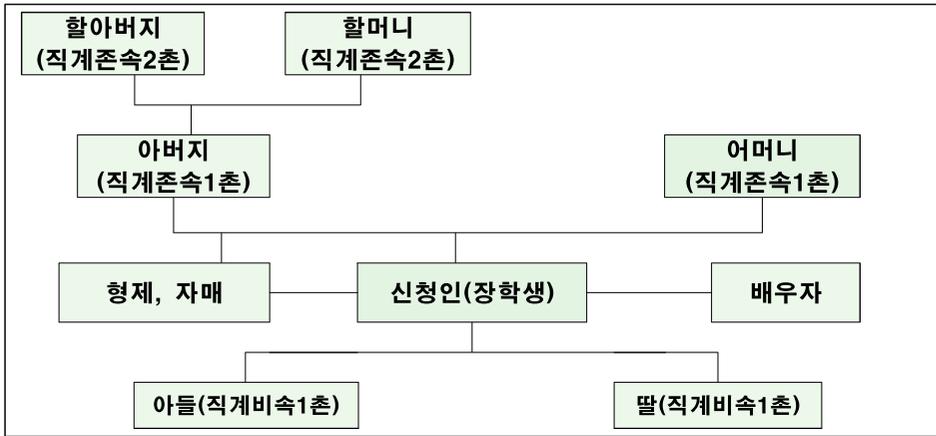
① 공통사항

- (원칙) 아래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(소득)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(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시 모두 제출)
  -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minwon.nhis.or.kr>)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) 1577-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
- (재산) 가사상황조사서(별지서식 4호)를 신청인 거주 세종시 관내 주민센터 방문하여, 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산상황(동산 및 부동산)을 확인 후 제출
  - 관외 거주자인 중,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서류로 가사상황조사서를 대체하여 제출 가능함
  - 관외 거주자인 중,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 불가
    - \* 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, 모 중 1인이 공고일 기준 반드시 1년 이상 세종시 거주 필수 요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관외거주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
- (예외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他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지원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 가사상황조사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
  -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소득분위확인서로 대체 가능

② 소득 조사

가. 가구원 수 산정

- (원칙)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'주민등록표'상에 기재된 가구원
  - 지원 대상 학생 본인,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, 2촌 이내의 직계 존·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 자매\*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·자매 제외



- (예외)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(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) 또는 형제자매(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)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  - ※ 조부모, 친인척, 동거인,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(모)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
- (기타사항)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

### 참고 자료

#### 예시 1

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(주민등록표 기준)

#### 예시 2

장학금을 신청한 아동(주민등록표상 2인 : 어머니, 아동)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

#### 예시 3

장학금을 신청한 노인(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: 노인, 아들1)이 따로 사는 아들2(4인 가구, 사돈 포함)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,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를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

## 나. 보험료 산출방법

- (산식)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÷ 납부개월수(3월)
  -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,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
  -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
    - ※ 장기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제외
- (보험료 합산)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(맞벌이 등)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,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
  -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(높은 보험료+낮은 보험료×0.5)

## 다. 중위소득 확인방법

- 중위소득 100%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

[배정기준 표 : (출처) 보건복지부(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)]

중위소득	배점	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							
	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65%	95		61,361	79,109	96,909	116,039	133,633	150,844	169,191	189,330	206,091
70%	90		66,173	85,379	105,411	124,490	144,749	163,883	183,286	202,387	222,133
80%	85		75,606	97,689	120,060	142,729	163,883	186,282	209,942	231,041	255,816
90%	80		85,379	110,015	135,303	159,761	186,282	209,942	236,255	263,711	283,533
100%	75		94,808	121,528	150,844	177,419	206,091	236,255	263,711	295,580	326,151
110%	70		103,268	133,633	166,543	195,425	226,441	255,816	295,580	326,151	348,036
120%	65	66,173	113,335	146,494	180,259	213,859	248,424	283,533	326,151	348,036	378,988
130%	60	72,254	122,961	159,761	195,425	231,041	272,807	310,158	348,036	378,988	410,509
140%	55	77,343	13,905	171,897	209,942	248,424	295,580	326,151	378,988	410,509	442,043
150%	50	82,923	142,729	183,286	226,441	272,807	310,158	348,036	410,509	442,043	487,738
160%	45	88,559	150,844	195,425	241,925	283,533	348,036	378,988	442,043	487,738	563,593
170%	40	93,838	159,761	209,942	255,816	310,158	348,036	410,509	442,043	487,738	563,593
180%	35	99,935	169,191	222,133	272,807	326,151	378,988	442,043	487,738	563,593	719,019

중위소득	배점	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							
	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65%	95		18,369	46,563	79,933	107,610	131,220	151,910	174,163	198,797	219,834
70%	90		25,519	59,833	94,807	119,198	144,355	168,085	191,312	215,233	239,780
80%	85		40,677	82,348	113,534	142,335	168,085	195,048	224,509	251,313	279,085
90%	80		59,833	99,350	133,509	162,358	195,048	224,509	257,406	287,857	308,578
100%	75		75,719	115,254	151,910	184,185	219,834	257,406	287,857	321,364	355,813
110%	70		90,722	131,220	170,991	206,898	245,305	279,085	321,364	355,813	380,294
120%	65	25,519	104,203	147,114	187,654	229,322	271,339	308,578	355,813	380,294	413,866
130%	60	33,784	116,782	162,358	206,898	251,313	297,628	336,809	380,294	413,866	449,143
140%	55	42,355	129,221	177,370	224,509	271,339	321,364	355,813	413,866	449,143	483,381
150%	50	54,701	142,335	191,312	245,305	297,628	336,809	380,294	449,143	483,381	531,741
160%	45	65,115	151,910	206,898	264,138	308,578	380,294	413,866	483,381	531,741	605,597
170%	40	74,244	162,358	224,509	279,085	336,809	380,294	449,143	483,381	531,741	605,597
180%	35	86,261	174,163	239,780	297,628	355,813	413,866	483,381	531,741	605,597	745,001

중위소득	배점	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							
	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65%	95		61,376	80,030	97,689	117,373	135,303	152,850	171,897	192,469	209,942
70%	90		66,876	86,273	106,572	125,994	146,494	166,543	186,282	206,091	226,441
80%	85		76,457	98,862	121,528	144,749	166,543	189,330	213,859	236,255	263,711
90%	80		86,273	111,256	137,059	161,683	189,330	213,859	241,925	272,807	295,580
100%	75		95,962	122,961	152,850	180,259	209,942	241,925	272,807	310,158	348,036
110%	70		104,200	135,303	169,191	198,870	231,041	263,711	310,158	348,036	378,988
120%	65	66,876	114,691	148,626	183,286	217,845	255,816	295,580	348,036	378,988	410,509
130%	60	72,951	124,490	161,683	198,870	236,255	283,533	326,151	378,988	410,509	442,043
140%	55	77,550	133,633	174,636	213,859	255,816	310,158	348,036	410,509	442,043	487,738
150%	50	83,802	144,749	186,282	231,041	283,533	326,151	378,988	442,043	487,738	563,593
160%	45	89,539	152,850	198,870	248,424	295,580	378,988	410,509	487,738	563,593	719,019
170%	40	94,808	161,683	213,859	263,711	326,151	378,988	442,043	487,738	563,593	719,019
180%	35	101,018	171,897	226,441	283,533	348,036	410,509	487,738	563,593	719,019	1,439,062

※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

### ③ 재산 조사

- 신청인이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, <참고 2> 서식의 **파란색 부분**  
**(① 재산상황, ② 신청자 거주 소재 읍·면·동장 의견, ③ 읍·면·동장 직인)** 작성  
 - 관내(세종시) 주민센터의 “재무담당 공무원”의 “재산상황”조희 협조 요청

구분	자격명	제출서류
기초생활수급자	기초생계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
	기초의료급여수급자	
차상위계층	기초주거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 교육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(NEIS 발급)
	기초교육급여수급자	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연금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계층대상자	차상위 계층확인서

## 참고 2 재산 조사 관련 가사상황조사서 양식

※ 반드시 본 양식과 (별지 제5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를 소지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 (학생)	성명			생년월일				
	주소			연락처	자택 :			
	세종시전입일	년	월		일	휴대폰 :		
	학교명			학년(학과)				
가족 사항	관계	성명	생년월일	건강정도	직업	월수입	비고	
주거환경	자가, 전세, 월세, 기타( ) (전세 : 천원, 월세 : 천원)							
생활주원	ex) 부, 모	월 소득금액	천원 (1인당 월평균 소득금액 : 천원)					
① 재 산 상 황	동산	천원		부 동산	전 대지	m <sup>2</sup>	답 임야	m <sup>2</sup>
	자동차	차명 년식			건축물(주택등) :		총 과세표준액 : 천원	
	관련대장 확인 : 재무담당자		(인)					
	② < 신청자 거주 소재 읍·면·동장 의견 >							
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					
2019년 월 일								
③ 추천자(읍면동장) :		읍·면·동장(기관장) (직인)						
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								

## 3. 특기적성 장학생 배점표

규모	주최자 및 대회 기준	배 점			비고
		1위	2위	3위	
국제	• 아시아 및 세계 대회 등	15	14	13	
전국	• 세계대회 선발전	10	9	8	
	• 전국 단위 협회·연맹 주최 전국대회 •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등 • 정부, 공공기관*,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	8	7	6	
	• 시도 단위 협회·연맹 주최 전국대회 •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	6	5	4	
	• 시도지사, 교육감 주최 전국 대회 • 전국대회 선발전, 시도 단위 연맹 주최 전국 대회 등 • 그 밖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5	4	3	

\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
※ 단체종목 경우 별도 개별 수상한 자만 선발(ex. 최우수 선수상)

## III 제출서류

구 분	구 비 서 류
성 적 우 수	고 등 학 생
	관 내 대 학 교

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
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③ [별지 제6호] 타 장학금 수혜·비수혜 확인서
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
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면계좌 확인)
⑦ [별지 제2호]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
⑧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학교 발급)
⑨ 석차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(학교에서 일괄 제출)
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
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③ [별지 제6호] 타 장학금 수혜·비수혜 확인서(학교 발급, 대학생은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)
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
⑤ 주민등록등본
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면계좌 확인)
⑦ [별지 제2호]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
⑧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학교 발급)
⑪ 재학증명서(공고일 이후 학교 발급)
⑫ 등록금 납입 영수증(학교 발급)

모 편	관 외 대 학 교	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 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[별지 제6호] 타 장학금 수혜·비수혜 확인서(학교 발급, 대학생은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) 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먼계좌확인) ⑦ [별지 제2호]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⑧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학교 발급) ⑩ 세종시 관내 기관 발급 봉사실적 증명서(있을 경우) ⑪ 재학증명서(공고일 이후 학교 발급) ⑫ 등록금 납입 영수증(학교 발급) ⑳ 기초·차상위·다자녀 증명서류(있을 경우)
	중 · 고등 학생	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 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먼계좌확인) 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최근 3개월,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⑮ [별지 제4호] 가사상황조사서(별지 제4호 본 서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필수) * 기초·차상위 계층은 ⑬,⑭,⑮ 서류대신 공고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가능
	대 학 생	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 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[별지 제6호] 타 장학금 수혜·비수혜 확인서(학교 발급, 대학생은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) 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먼계좌확인) ⑪ 재학증명서(공고일 이후 학교 발급) ⑫ 등록금 납입 영수증(학교 발급) 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최근 3개월,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⑯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(한국장학재단 발급) * 기초·차상위 계층은 ⑬,⑭,⑯ 서류대신 공고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가능

모 편	특 기 적 성	초·중·고등학생	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 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먼계좌확인) ⑰ [별지 제3호] 특기적성 장학생 학교장 추천서(학교 발급) ⑱ 수상실적증명서류(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적) ※ 상장 사본 및 경기실적증명서만 인정 ⑲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최근 3개월,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⑳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	지역혁신인재	대학생·일반시민	㉑ [별지 제9호] 지역혁신인재장학생신청서,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, 미래계획서, 장학금 사용계획서, 활동포트폴리오, 개인정보수집동의서, 서약서, 기타 증빙서류(ex. 봉사실적 등)
	공익발전기여	중·고·대학생	① [별지 제1호] 장학금지원신청서 ② [별지 제5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[별지 제6호] 타 장학금 수혜·비수혜 확인서(학교 발급, 대학생은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) ④ [별지 제7호]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, 휴먼계좌확인) ⑱ [별지 제8호]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추천서(학교 발급) ㉒ 공익발전기여자 증명서류(ex. 순직보상급여지급사실확인서, 국가유공자 해당사실 확인서) 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최근 3개월,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,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



(별지 제4호 서식) ※ 반드시 본 양식과 (별지 제5호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소지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## 가 사 상 황 조 사 서

<b>신청인 (학 생)</b>	성 명		생년월일		<b>연락처</b>	자 택 :		
	주 소					휴대폰 :		
	세종시전입일		년	월	일			
학 교 명		학년(학과)						
<b>가 족 사 항</b>	관계	성 명	생년월일	건강정도	직 업	월수입	비 고	
주거환경	자가, 전세, 월세, 기타( ) (전세 : 천원, 월세 : 천원)							
생 활 주 원	ex) 부, 모	월 소득금액	천원 (1인당 월평균 소득금액 : 천원)					
※ 붉은 칸은 학생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무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작성 후 진공원 제출(신청자는 작성하지 말 것)								
<b>① 재 산 상 황</b>	동산	천원		부 동산	전 대지	㎡	답 임야	㎡
	자동차	차명			건축물(주택등) :			
		년식			총 과세표준액 :		천원	
	관련대장 확인 : 재무담당자 (인)							
<b>② &lt; 신청자 거주 소재 읍·면·동장 의견 &gt;</b>								
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					
2019년 월 일								
③ 추천자(읍면동장) : 읍·면·동장(기관장) (직인)								
<b>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</b>								

(별지 제5호 서식)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
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귀중

<p>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(이하 '진흥원')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/p> <p>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종 수혜를 확인하거나,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,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조회 및 국가, 관계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고등교육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, 그 밖의 공공기관(단체) 등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</p>	
<b>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</b>	
수집·이용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장학금 이종수혜 확인 및 선발 등</li> </ul>
수집·이용할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개인식별정보</li> <li>▶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학교, 주소·전자우편 주소·전화번호 등</li> <li>▪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</li> <li>▶ 주민등록등·초본 전산정보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, 학자금 지원정보, 고객이 제공한 정보 등</li> <li>*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.</li> </ul>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 정관 제4조(사업)관련 필요한 경우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귀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	귀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신청·선정·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b>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</b>	
제공·조회 대상기관	국가, 관계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고등교육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, 그 밖의 공공기관(단체) 등으로,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
제공·조회 목적	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,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, 법령상 의무이행 등
제공·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(개인식별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등)</li> <li>*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.</li> </ul>
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	위 개인정보는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공·조회 동의 여부	귀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	귀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신청·선정·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.

2019년 월 일

학생 : (서명 또는 인) 부 : (서명 또는 인)

모 : (서명 또는 인)

※ 학생, 부모(보호자) 모두 동의해야 함

**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**

# 타 장학금 수혜(비수혜) 확인서

## 1. 인적사항

성 명		생년월일	
학교(기관)명		주 소	
학 년		학과 (반)	

## 2 최근 타 장학금 수혜(비수혜) 여부

장학금 수혜 여부		장학금 수혜내용			
있 음	없 음	지급기관(단체 등) ※ 교내·외 장학금 기재	받은 일시 *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	종류	받은 금액

※ 해당년도 진흥원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상한 경우 반드시 기재

위 학생에 대하여 최근 장학금 수혜(비수혜)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19년 월 일

확인자 성 명  
전화번호

학교장(기관장) 직인

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

# 서 약 서

성 명		생년월일	
학교명		주 소	
학 년		학과(반)	

본인은 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  
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1. 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  
하며,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세종시를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소임  
을 성실히 이행
2. 장학사업 관리규정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제14조에 장학금 반납  
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
3. 장학금 수여식, 장학생 행사 및 재단의 운영·발전에 적극 참여

2019년 월 일

서약자 성명 (인)

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



(별지 제9호 서식)

##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

- 자기소개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 등을 서술하세요(3장 이내 작성)

(별지 제9호 서식)

## 미래계획서

-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서술하세요(3장 이내 작성)

### 장학금 사용계획서

지출항목	사용처	산출내역	사용금액	사용목적	비고
합계					

### 활동포트폴리오

- 본인이 활동한 사항, 수상(최근 3년 이내)등에 대한 사항(5장 이내 작성)

